규제영향분석서

# 보험업감독규정

<목 차>

1.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보험기간 설정
2.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 마련
3.보험회사의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| 소관부처 | 금융위원회 | 작성자 | 이름 | 김기훈 |
| | 담당부서(과) | 보험과 | | 직급 | 행정사무관 |
| | 국장 | 권대영 | | 연락처 | 02-2100-2962 |
| | 과장 | 김동환 | | 이메일 | 2081045@mail.go.kr |

2021. 03. 03. 작성

정책책임자직위 성명 (서명)

## < 규제 개요 >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기본 정보</td><td>1.규제사무명</td><td colspan="3">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보험기간 설정</td></tr>
<tr><td>2.규제조문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감독규정 제2-11조</td></tr>
<tr><td>3.위임법령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법 시행령 제13조의2</td></tr>
<tr><td>4.유형</td><td>신설</td><td>5.입법예고</td><td>2021.03.10 ~<br>2021.04.19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규제의 필요성</td><td>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법 개정('20.12.8)에 따라 보험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설정</td></tr>
<tr><td>7.규제내용</td><td colspan="3">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(시행령에서 2년이하로 위임)</td></tr>
<tr><td>8.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3">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예비사업자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유 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/tr>
<tr><td>피규제자</td><td>예비사업자</td><td>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관한 것으로 사전에 예비사업자 추산 불가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9.규제목표</td><td colspan="3">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규제의 적정성</td><td rowspan="2">10.영향평가 여부</td><td>기술영향평가</td><td>경쟁영향평가</td><td>중기영향평가</td></tr>
<tr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</td><td colspan="3">시행령 개정안에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 등을 정하고 있으며, 비용검증 결과 별도 비용은 없는 것으로 산출됨.<br>(기존 보험회사 대비 최저자본금 감소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절감)<br>스타트업, 핀테크기업 등의 보험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투자, 일자리 등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기타</td><td>12.일몰설정 여부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13. 우선허용·사후 규제 적용여부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/table>

<조문 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<신 설> | 제2-11조(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)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. |

## Ⅰ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□ 현재 보험업법상 종합보험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**높은 자본금**(300억원)이 필요함에 따라 **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환경**

○ 이에 '20.12.8일 **보험업법 개정**을 통해 **소액·단기 보험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**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도입하고, **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**(최저자본금 등)

□ 시행령 개정안에서 **최저 자본금을 20억원**으로 설정하고 있으며, **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감독규정**에 위임하고 있음

#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#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□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

○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서 보험기간을 2년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 때 예측하지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임

###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| 이해관계자명 | 주요 내용 | 조치결과 |
|---|---|---|
| 예비사업자 | 입법예고(3.10.~4.19.) | |
| | | |
| | | |

### 3. 규제목표

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스타트업, 핀테크

기업 등의 보험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투자, 일자리 창출에 기여

## Ⅱ. 규제의 적정성

#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시행령에서 위임(2년 이하)하고 있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목표에 적합

#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| 영향평가 | | |
|---|---|---|
| 기술 | 경쟁 | 중기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o 영향평가

- 중기영향평가

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 촉진을 위해 **세부기준을 마련**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 촉진을 위해 **세부기준을 마련**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| | |
|---|---|
| ① 규제 영역 | |
| ② 규제 방식 | |
| ③ 예비분석모델 | |

| | |
|---|---|
| 판단 근거 | |
| ④ 대상 업종 | |
| ⑤ 예비분석내용 | |
| ⑥ 차등화적용 여부 | |

## 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보험업 인가정책에 관한 것으로 **보험산업 건전성 및 보험계약자 보호**를 위해 **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**

## - 일몰설정 여부

보험업 인가 세부기준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 부적절

## 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여부

해당사항 없음

| 분류 | 적용여부 | 적용내용/미적용사유 |
|---|---|---|
| 포괄적 개념 정의 |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유연한<br>분류<br>체계 | | |
| 네거티브<br>리스트 | | |
| 사후<br>평가관리 | | |
| 규제<br>샌드박스 | | |

#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### o 해외사례

일본은 소규모 공제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보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‘06년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였으며,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

### o 타법사례

해당사항 없음

## Ⅲ. 규제의 실효성

### 1. 규제의 순응도

o **피규제자 준수 가능성**

금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인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규로 보험산업에 진입하려는 자에 적용되는 만큼 규제 준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

###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o **행정적 집행가능성**

금번 개정안은 보험업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**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**

o **재정적 집행가능성**

예산 소요 없음

## 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# 1. 추진 경과

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'20.12.8일 개정됨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, 반대의견 없음

### 2. 향후 평가계획

시행 이후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허가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

### 3. 종합결론

그동안 진입장벽이 높았던 **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**하기 위해 **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세부 기준**을 마련할 필요

**별 첨** **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**

## 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| 분석기준년도 | 규제시행년도 | 분석대상기간(년) | 할인율(%) | 단위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1 | 2021 | 10 | 4.5 | 백만원, 현재가치 |

| 규제대안1 :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영향집단 | | 비용 | 편익 | 순비용 |
| 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 | 직접 | | | |
| | 간접 | | | |
| 피규제 일반국민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| | | | |
| 정부 | | | | |
| 총 합계 | | | | |
| 기업순비용 | | | 연간균등순비용 | |

|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|
|---|
| |

## 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>

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□ 직접편익

| | |
|---|---|
| (정성)세분류 | 예비사업자 |
| 활동제목 |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|
| 편익항목 | 자본금 등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/ |
| 근거설명 |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으로, 현재 영업중인 보험회사 등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의무가 없으며 기존에 비해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한 점(300억원에서 20억원)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만큼, 비용편익 분석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|

## < 규제 개요 >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기본<br>정보</td><td>1.규제사무명</td><td colspan="3">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 마련</td></tr>
<tr><td>2.규제조문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감독규정 제6-11조</td></tr>
<tr><td>3.위임법령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의2</td></tr>
<tr><td>4.유형</td><td>신설</td><td>5.입법예고</td><td>2021.03.10 ~<br>2021.04.19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규제의<br>필요성</td><td>6.추진배경<br>및 정부개입<br>필요성</td><td colspan="3">□ 보험업법 개정('20.12.8일)으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평가금액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계리업자를 통한 검증*(외부검증)이 의무화됨<br><br>* 계리업자 :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책임준비금 등 주요 항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을 수행<br>보험요율산출기관 : 보험산업 참조순보험요율 산출, 보험회사의 보험료·책임준비금 등 기초서류 확인 및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<br><br>□ 이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필요</td></tr>
<tr><td>7.규제내용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법 개정('20.12.8일)에 따라 의무화된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·적립의 적정성 외부검증과 관련하여<br>보험회사가 외부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</td></tr>
<tr><td>8.피규제집단<br>및<br>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3">보험회사<br><table><tr><th colspan="2">유 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/tr><tr><td>피규제자</td><td>보험회사</td><td>41개 보험회사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9.규제목표</td><td colspan="3">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적립함으로써, 보험계약자 보호는 물론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규제의<br>적정성</td><td>10.영향평가<br>여부</td><td>기술영향평가</td><td>경쟁영향평가</td><td>중기영향평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</td><td>11. 비용편익<br>분석<br>(정성분석)</td><td colspan="3">책임준비금 적정성에 관한 외부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<br>(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분석은 시행령 개정시 진행하였으며, 감독</td></tr>
</table>

| | | |
|---|---|---|
| | | 규정은 단순히 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) |
| 기타 | 12. 일몰설정 여부 | 해당사항 없음 |
| | 13. 우선허용·사후 규제 적용여부 | 해당사항 없음 |

<조문 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<신 설> | 제6-11조(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) ① 보험회사는 영 제63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br>②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에게 재검증하게 할 수 있다.<br>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 |

## Ⅰ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□ 보험업법 개정('20.12.8일)으로 보험사의 **책임준비금 평가금액에 대한 신뢰성 확보**를 위해 **외부계리업자**를 통한 **검증***(외부검증)이 의무화됨

* 계리업자 :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책임준비금 등 주요 항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을 수행

보험요율산출기관 : 보험산업 참조순보험요율 산출, 보험회사의 보험료·책임준비금 등 기초서류 확인 및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

□ 이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**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**에 관한 **세부기준을 마련**하여 **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**할 필요

#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#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'23년부터 **새로운 보험회계제도**(IFRS 17)가 도입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보험사의 **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기준**을 마련할 필요
시행령 개정안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, 감독규정에서는 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

###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| 이해관계자명 | 주요 내용 | 조치결과 |
|---|---|---|
| 보험회사 | 입법예고(3.10.~4.19.) | |
| | | |
| | | |

### 3. 규제목표

## Ⅱ. 규제의 적정성

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□ 보험회사별로 특화된 상품구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**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**하되 **제3자의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**으로서, 보험회사 **경영의 자율성을 보장**하면서 **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개선**할 수 있어 목적·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

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| 영향평가 | | |
|---|---|---|
| 기술 | 경쟁 | 중기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### o 영향평가

#### - 경쟁영향평가

대기업인 보험회사(자본금 최소 50억원 이상으로, 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 없음)에 대한 규제 강화로,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#### - 중기영향평가

대기업인 보험회사(자본금 최소 50억원 이상으로, 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 없음)에 대한 규제 강화로,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#### 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| | |
|---|---|
| ① 규제 영역 | |
| ② 규제 방식 | |

| | |
|---|---|
| | |
| ③ 예비분석모델 | |
| 판단 근거 | |
| ④ 대상 업종 | |
| ⑤ 예비분석내용 | |
| ⑥ 차등화적용 여부 | |

## 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자율적 책임준비금 적립을 허용하되 외부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,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에 해당

## - 일몰설정 여부

책임준비금은 매 결산시마다 적립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 부적절

## 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여부

| 분류 | 적용여부 | 적용내용/미적용사유 |
|---|---|---|
| 포괄적 개념 |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정의 | | |
| 유연한<br>분류<br>체계 | | |
| 네거티브<br>리스트 | | |
| 사후<br>평가관리 | | |
| 규제<br>샌드박스 | | |

#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### o 해외사례

### o 타법사례

## Ⅲ. 규제의 실효성

### 1. 규제의 순응도

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이미 외부감사 등을 받고 있는 대기업인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을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법인에 검증 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

###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o 행정적 집행가능성

보험회사 감독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므로,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

o 재정적 집행가능성

재정 소요 없음

## 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# 1. 추진 경과

보험업법 개정(‘20.12.8일)에 따른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반대의견 없음

### 2. 향후 평가계획

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시 이후 책임준비금 규모 변화를 점검할 계획

### 3. 종합결론

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

해, 책임준비금 산출·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의 제3자로부터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

**별 첨** **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**

## 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| 분석기준년도 | 규제시행년도 | 분석대상기간(년) | 할인율(%) | 단위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1 | 2021 | 10 | 4.5 | 백만원, 현재가치 |

| 규제대안1 :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영향집단 | | 비용 | 편익 | 순비용 |
| 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 | 직접 | | | |
| | 간접 | | | |
| 피규제 일반국민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| | | | |
| 정부 | | | | |
| 총 합계 | | | | |
| 기업순비용 | | | 연간균등순비용 | |

|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|
|---|
| |

## 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>

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□ 직접비용

| | |
|---|---|
| (정성)세분류 | 보험회사 |
| 활동제목 |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결과 제출 |
| 비용항목 | 제출비용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/ |
| 근거설명 |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에 따른 검증비용은 시행령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, 감독규정에서는 해당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|

## < 규제 개요 >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기본<br>정보</td><td>1.규제사무명</td><td colspan="3">보험회사의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</td></tr>
<tr><td>2.규제조문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감독규정 제7-46조</td></tr>
<tr><td>3.위임법령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</td></tr>
<tr><td>4.유형</td><td>신설</td><td>5.입법예고</td><td>2021.03.10 ~<br>2021.04.19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규제의<br>필요성</td><td>6.추진배경<br>및 정부개입<br>필요성</td><td colspan="3">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에 소송현황을 추가할 필요</td></tr>
<tr><td>7.규제내용</td><td colspan="3">현재 보험회사가 공시하고 있는 정보(소송제기건수 등)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</td></tr>
<tr><td>8.피규제집단<br>및<br>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3">보험회사<br><table><tr><th colspan="2">유 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/tr><tr><td>피규제자</td><td>보험회사</td><td>55개 보험회사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9.규제목표</td><td colspan="3">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, 알권리 등을 보장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규제의<br>적정성</td><td rowspan="2">10.영향평가<br>여부</td><td>기술영향평가</td><td>경쟁영향평가</td><td>중기영향평가</td></tr>
<tr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11. 비용편익<br>분석<br>(정성분석)</td><td colspan="3">보험회사가 기존에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<br>보험회사의 공시항목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기타</td><td>12.일몰설정<br>여부</td><td colspan="3"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13. 우선허용·<br>사후 규제<br>적용여부</td><td colspan="3">해당없음</td></tr>
</table>

<조문 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7-46조(보험상품의 비교·공시 등) | 제7-46조(보험상품의 비교·공시 등) |
|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·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단체보험, 일반손해보험(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)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. | ① (현행과 같음) |
| 1. ~ 2. (생 략) | 1. ~ 2. (현행과 같음) |
| 3. 보험회사별 | 3. 보험회사별 |
| 가. ~ 나. (생 략) | 가. ~ 나. (생 략) |
| 다.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| 다.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,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 |
| 라. (생 략) | 라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⑥ (생 략) 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|

## Ⅰ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최근 일부 보험사가 **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**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**사회적 논란이 발생**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**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**이 제기되고 있음

#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#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

###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| 이해관계자명 | 주요 내용 | 조치결과 |
|---|---|---|
| 보험회사 | 입법예고(3.10.~4.19.) | |
| | | |
| | | |

### 3. 규제목표

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개함으로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방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

## Ⅱ. 규제의 적정성

#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 방지,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목적 달성에 필요한 규제 도입으로 판단

#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| 영향평가 | | |
|---|---|---|
| 기술 | 경쟁 | 중기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o 영향평가

- 경쟁영향평가

모든 보험회사에게 동일하게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만큼,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
- 중기영향평가

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제로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제로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| | | |
|---|---|---|
| ① 규제 영역 | | |
| ② 규제 방식 | | |
| ③ 예비분석모델 | | |
| | 판단 근거 | |
| ④ 대상 업종 | | |
| ⑤ 예비분석내용 | | |

| | |
|---|---|
| | |
| ⑥ 차등화적용 여부 | |

## 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되, 해당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장유인적 규제에 해당함

## - 일몰설정 여부

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해당사항 없음

## 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여부

| 분류 | 적용여부 | 적용내용/미적용사유 |
|---|---|---|
| 포괄적 개념 정의 | | |
| 유연한 분류 체계 |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네거티브 리스트 | | |
| 사후 평가관리 | | |
| 규제 샌드박스 | | |

##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o 해외사례

o 타법사례

## Ⅲ. 규제의 실효성

### 1. 규제의 순응도

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현재도 보험회사는 다양한 정보를 공시중인 만큼, 공시항목 추가에 따른 업무부담은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됨

##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### o 행정적 집행가능성

보험회사 자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행정 부담 없음

### o 재정적 집행가능성

재정 소요 없음

# 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 1. 추진 경과

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20년11월9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소송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,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

## 2. 향후 평가계획

보험회사가 공시해야하는 항목을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보험협회 등을 통해 점검

## 3. 종합결론

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

**별 첨** **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**

## 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| 분석기준년도 | 규제시행년도 | 분석대상기간(년) | 할인율(%) | 단위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1 | 2021 | 10 | 4.5 | 백만원, 현재가치 |

| 규제대안1 :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공시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영향집단 | | 비용 | 편익 | 순비용 |
| 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 | 직접 | 34.56 | | 34.56 |
| | 간접 | | | |
| 피규제 일반국민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 |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| | | | |
| 정부 | | | | |
| 총 합계 | | 34.56 | | 34.56 |
| 기업순비용 | | 34.56 | 연간균등순비용 | 4.17 |

|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|
|---|
| |

## 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### <규제대안1 :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공시>

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□ 직접비용

| (정량)세분류 | 보험회사 |
|---|---|
| 활동제목 | 보험회사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공시 |
| 비용항목 | 노동 |
| 비용 | 34,563,544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/연간균등 |
| 산식 | 1명X1시간X2회(반기별)X시간당 근로임금X피규제보험회사수 (1*1*2*38000*55) |
| 근거설명 | 현재 보험회사는 반기별로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, 금번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소송관리 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임<br><br>보험회사는 현재 반기별로 공시해야하며, 단순히 공시항목이 추가되는 것이며 그 항목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인 만큼 최대 1시간의 업무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<br><br>현재 국내에 55개의 보험사가 있는 만큼 투입인원(1명),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시간(1시간), 연간 2회, 시간당 근로임금(3.8만원), 보험회사수(55개)를 곱하여 최종비용을 산출<br><br>(시간당 근로임금은 대형, 중형, 소형 각 1개 보험사의 사업방법서를 기준으로 평균연봉(대형 8,300만원 / 중형 7,700만원 / 소형 6700만원), 연간 근무일수(250일), 일평균 근무시간 8시간을 적용하여 계산) |

②피규제 일반국민 :

□ 편익

| (정성)세분류 | 보험소비자 |
|---|---|
| 활동제목 | 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확인 |
| 편익항목 | 보험회사 정보 확대 |
| 일시적/반복적 | 반복적/ |
| 근거설명 | |

| | |
|---|---|
| | 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,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|